

‘20.8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 개정 주요내용

개정내용	사유
■ 지원대상자 요건에 ‘고등학교·대학교·대학원 재학생 참여 불가(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유예·수료·예정자는 참여 가능)’ 추가(6쪽)	문구 명확화
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미취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서 ‘종합소득세 신고서’ 제외(13쪽)	최신 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
■ 가구원 확인방법에서 ‘부 또는 모와의 관계 단절로 개인정보제공동의가 불가능한 경우’ 처리방안 추가(17쪽등)	“생계 및 주거를 달리함을 증빙이 가능할 경우 가구소득 산정대상 가구원에서 제외”하도록 인정 사례 확대
■ 보고서 부실기준에서 ‘증빙서류 미제출’ 삭제(35쪽)	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보고서 미제출로 처리
■ ‘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상 출근일 보다 실제 출근일이 늦는 경우’ 처리방안 추가(39쪽) ① 실제 출근까지 기간동안 임금·유급휴직급여 등 대가를 받는 경우→ 계약서상 출근일 기준으로 지원 종료 ② 실제 출근까지 기간동안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→ 추가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할 경우 계속지원 가능	코로나로 출근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처리방안 추가
■ 최종합격 통지일 기준 지원종료에 공무원 합격 외 ‘임용고시’ 추가(40쪽)	국공립 교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표현 명확화
■ ‘유예기간 동안 유사사업에 참여, 취창업 한 경우 처리방안’ 추가(41쪽) ① 유예기간 동안 취·창업 발생→ 유예해제 전 퇴사·폐업하였다면 유예해제 후 계속 참여 가능(*유예해제시점까지 계속 근로 중·사업중이면 지원종료) ② 유예기간 동안 동시참여가 금지된 사업에 참여→ 지원 중단	①유예기간 동안은 지원이 중단되므로 정부재원과 관계없는 취창업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②다만, 유사사업의 경우 유예자는 향후 정부재원 투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 참여를 허용하기 어려움
■ 취업성공금 요건에 ‘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변경되었으나 근속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’ 추가(44쪽) - 고용승계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변경되었음에도 피보험기간 단절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, 장소·사업주·법인의 동일성 및 이직의 비자발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	청년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기준추가 (인수합병, 회사 분할 등으로 ‘법인’은 바뀌지만 청년 본인입장에서는 고용 승계 등으로 동일 사업장과 다른없는 경우 그간 민원 발생)
■ 불규칙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계산시 (1회차 보고서) 단위기간을 선정익일부터 첫 보고서 제출일 또는 신청일부터 첫 보고서 제출마감일 중 택할 수 있도록 변경(100쪽등)	청년에게 유리하게 적용